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11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7.30(목)

노·사 지부집단교섭 의제 전체 의견접근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교섭의무 조항 마무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11차 집단교섭이 7월 30일(목) 14시, 우영산업지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에 앞서 13시부터 우영산업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섭에 들어갔다.

이날 교섭에는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21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박인룡 총무부장의 사회로 교섭 성원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무더위에도 우영산업을 방문한 노·사 교섭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10차 사용자측 제시안에 대한 노측 답변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져 현장 노동자들이 힘들 것”이라며 “노·사 모두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영

산업 대표이사가 불참했다. 내부 결정사항이니 우영산업은 2시간 추가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10차 사측 제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올해 지부집단교섭 의제는 큰 쟁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일찍 의견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중앙교섭과 완성차 상황으로 인해 지부집단교섭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중앙교섭에서 빠른시간안에 축소교

섭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지난 10차 지부집단교섭의 사측 수정 제시안에 대한 노측 입장이 전달됐다.

노조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조항과 관련해 정 지부장은, “에코플라스틱만 해도 자회사에 대해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원안 수용을 요구했다. 또한 교섭의무 조항과 관련해 “1항은 원안 수용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의무 조항의 2,3항은 노측이 수용하겠다”며 “지부가 회사측 요구를 받을 의지가 있다는 것이니 사측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측 입장 전달 이후 사측은 내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교섭은 14시 7분 정회에 들어갔으며, 14시 39분 속개됐다.

정회 이후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노조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1항과 교섭의무 1항에 대해 원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중양교섭 타결내용을 제외한 의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중양교섭이 타결되면 보충교섭에서 의견접근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석상에서는 지난 10차 교섭 이후 발레오만도 사측이 발행한 소식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사측이 악의적인 내용으로 사측 소식지에 담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소식지에서 말한 발레오만도의 ‘상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박용대 부사장은 “상처란 직원과 회사 모두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애둘러 답변했다.

정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상처를 언급하며 “책상을 복도로 빼고 청소를 시키고, 정년을 회사 앞 천막에서 보내게 한 모욕을 잊을 수 없다”며, “발레오만도는 지난 역사에 대해 조합원들이 용서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상해 대표이사가 무분규 타결을 원한다고 하는데 지켜보겠다”며

발레오만도 사측이 처신을 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추가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12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11차 교섭 사측 수정제시안 수용내용(2026.07.30.)

①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 (원안수용) ① 회사는 2026.3.10.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섭형태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측 수정제시) ②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및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결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회사가 자회사, 하청업체 등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된다는 이유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해태 또는 지연하지 않는다.

②. [교섭의무]

- (사측 수정제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원안수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① 정규직 전환,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자 지위
- (사측 수정제시) ② 노동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 (사측 수정제시) ③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2호에 한함)

